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편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11호)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편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4조의2 신설 등)	4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근거 마련 등(안 제8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9.

다.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여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
- 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를 처벌함(안 제106조).
- 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단체 또는 편성위원회로부터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

IV. 검토의견

1. 편성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안 제4조의2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법」(이하 “법”)에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28호 신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2 신설),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3항),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공포(안 제4조제4항)하도록 하며, 재허가 시 개정안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 및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안 제17조제3항) 등의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7. (현행과 같음)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하여 <u>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한</u>

현행	개정안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략)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다)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 ④ ----- -----방송프로그램 취재·보도·제작·편성-----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둔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신설> 6. (생략) ④ (생략) 第10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 및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준수 여부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 ----- -----

현행	개정안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1.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조의2에 위반하여 편성위원회 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성 또는 운영을 방해한 자
2. ~ 6. (생략) ②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 -----.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 送編成責任者の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1.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 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 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신설>	나.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 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 한 자
<신설>	다.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방해한 자
<신설>	1의2.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 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1의3.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 1의3. (생략)	1의4. · 1의5.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 의3과 같음)
2. ~ 28. (생략)	2. ~ 28.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제4조1)에서 전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2)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함.
- 개정안은 이러한 방송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
- 1)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2)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의 절차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4년 12월 기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37개사, 보도전문편성 3개사 등 40개사임.

구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37개사)	- 중앙지상파방송(3)	KBS, MBC, SBS
	- 종합편성PP(4)	JTBC, TV조선, 채널A, MBN
	-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경인방송(OBS)
	- 라디오방송(3)	티비에스,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 지상파DMB(1)	YTNDMB
보도전문편성 (3개사)	- 보도전문편성PP(2)	YTN, 연합뉴스TV
	- 라디오방송(1)	YTN라디오
계	40개사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안 제4조의2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만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 제4조제3항에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이 같은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문정리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안 제17조제3항제6호·제7호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 마련 준수 및 편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허가·재승인시 심사받도록 하고 있어 조문의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셋째, 안 제4조의2제2항제2호는 종사자 대표를 추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 관계 부처 등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방송편성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의무 설치 및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도록 하며, 방송편성책임자 제청·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종사자 대표 선정, 방송편성규약 공표, 편성위원회 설치대상 등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검토가 필요한 조문³⁾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3) 방통위의 조문 검토 필요 의견

- **(종사자 대표)** 개정안은 ‘종사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편성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제4조의2, 신설)
 - 종사자 대표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사자 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업자 내부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
- **(방송편성규약 공표 주체)** 개정안은 편성위원회가 제·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방송사업자가 공표할 의무가 있으나, 편성위원회에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어(제4조의2, 신설)
 - 방송사업자와 편성위원회의 방송편성규약 공표 관련하여 조문간 중복 우려
-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의무)** 현행 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편성위원회가 제·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방송사업자가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제4조 제4항)
 -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에 대한 의무가 편성위원회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공표 할 수 없어, 벌칙의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은 자가 모호해 질 수 있음(제106조 제1항)

○ 또한, 방통위는 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시 심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사항으로 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규약 준수 등을 추가 심사하여 방송편성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규약 준수 등 위반시 벌칙·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재허가·재승인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제4조제3항 법문언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2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제3항은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제청을 받아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어, 규정 간 불일치 발생하고, 종합편성이나 보도 방송을 하지 않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도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가

-
- **(편성책임자 선임)** 현행 법은 모든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종합·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모든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제4조 제3항)
 - 모든 방송사업자(SO·위성·PP 등)가 편성위원회 설치 대상으로 해석될 우려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KBS, SBS, 채널A, JTBC,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케이블TV협회, SkyLife 등 다수의 방송사업자도 반대 또는 신중검토 등의 입장임.

- (KBS : 신중검토) 편성규약 제·개정 권한을 방송사업자에서 편성위원회로 부여하는 사업자의 권한 침해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을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선임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소지가 높고, ‘종사자 대표’의 선정절차 및 결정권자에 내용이 없어 혼란이 예상됨.

- (SBS : 반대) 이미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이며, 특히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율성 침해임

- (채널A : 신중검토) 편성위원회의 인적 구성, 심의 의결 사항 등 세부 사항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방송사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필요

- (JTBC : 반대) 방송사의 자율에 따라 운영·관리해 온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한하고, 재허가 심사시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준수 평가는 변별력 부재

- (TV조선 : 신중검토) 방송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벌칙·과태료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할 우려가 있음
 - (MBN : 반대)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경영권 및 언론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시청자위원 추천이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지 논란을 야기하며, 재승인 심사에 반영은 규제완화 추세에 상충됨
 - (YTN : 재검토) 보도전문채널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편성위원회 법제화는 언론사 인사 및 경영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연합뉴스TV : 신중검토) 편성위원회 설치, 심의·의결권 부여, 편성책임자 선임 등은 과잉 입법으로, 민간방송사업자의 인사권, 경영권 등 침해 소지
 - (케이블TV협회 : 신중검토) 재허가 부관사항으로 시청자위원회 운영하고 있어 방송법에 반영은 중복 규제로 행정적 실효성이 없음
 - (SkyLife : 신중검토) 유료방송플랫폼이 OTT 등 신규미디어와 경쟁하고 있어, 규제 신설보다는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
- 참고로, 안 제4조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

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주체가 전체 방송사업자인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인지 불분명한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안 제4조제3항 전단을 현행대로 하되, 후단을 이래과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 또한, 안 제4조의2제2항제2호에서 편성위원회 위원 중 5명은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취재·보도·제작·편성 각 4개의 부문 종사자의 대표가 각각 추천하는 것인지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추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 종합해보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편성위원회에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권한을 줌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 제청·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종사자 대표 선정, 방송편성규약 공표, 편성위원회 설치대상 등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검토가 필요한 조문이 있다는 방통위, 과기부 및 방송사업자들의 신중검토 의견과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가지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근거 마련 등(안 제8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법 제87조제1항4)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같은 조제2항5)에 종합편성(제1호) 또는 보도전문편성(제2호)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홈쇼핑(제3호)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제4호)의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の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u>

- 4)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5)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③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1. (생략) <신설> 22. ~ 28. (생략) ②·③ (생략)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 -----. 1.~21. (생략)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제87조제1항6)에서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6)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⁷⁾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⁸⁾에 명시된 14개 분야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시행령 제64조⁹⁾에서 정한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7)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9)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는 2024년 12월 기준 종합편성(37개사), 보도전문편성(3개사), 홈쇼핑사업자(12개사) 등 52개사임.

구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37개사)	- 중앙지상파방송 3개사 (KBS, MBC, SBS)
	- 종합편성PP 4개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 지역MBC 16개사 (강원영동,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경남, 충북, 춘천, 포항)
	- 지역민방 10개사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울산방송, G1, OBS경인TV)
	- 라디오방송 3개사 (서울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 지상파DMB 1개사 (YTNDMB)
보도전문편성(3개사)	- 보도전문편성PP 2개사 (YTN, 연합뉴스TV)
	- 라디오방송 1개사 (YTN라디오)
홈쇼핑사업자(12개사)	- 홈쇼핑사업자 12개사(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공영홈쇼핑, W쇼핑, TRN, SK스토아, NS홈쇼핑, KT알파쇼핑, GS리테일, CJ온스타일)
계(52개사)	52개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은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하며, 홈쇼핑,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통위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 SO등에게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 제87조제1항제4호로 SO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되면 현행 제90조의 방송사업자의 의무·심의결과 처리절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제90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제4항 후단에 과기부장관에의 통지·의무 대상에 SO 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안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지상파,종편·보도전문·홈쇼핑PP는 시청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개정안의 SO·위성방송사업

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방통위는 개정안(안 제87조제2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편성위원회 설치 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시청자위원회의 다양성, 자율성과 독립성에도 편성위원회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 검토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는 개정안 제87조제1항에 대해 개정안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이 경우 현행법 제90조제4항¹⁰⁾에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제87조제1항제3호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 수정하여, 안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방통위가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 방송사업자를 소관 하는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한편, KBS, JTBC, Skylife 등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방송사업자 확대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신중검토 등의 입장임.
- (KBS : 신중검토) 시청자위원 추천을 내부 이해관계자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시청자 대표 선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JTBC : 반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단체 추천으로 위촉하고 있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은 법령간 충돌을 야기함
- (SkyLife : 신중검토) 유료방송플랫폼이 OTT 등 신규미디어와 경쟁하고 있어, 규제 신설보다는 규제 형평성 제고 필요함.
- 참고로, 안 제87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 제2조제3호11)에서 각각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법문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11)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하고,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사업자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방통위, 과기부의 수용입장,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신중검토 입장, 과기부의 수정의견 및 시청자위원회 설치 사업자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중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